

지역방재력 향상을 위한 방재마을 만들기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A Study on Vitalizing a Project for Building a Disaster Resistant Community to Enhance Local Disaster Prevention

권건주* · 한기원** · 백민호***

Kwon, Gun-Ju · Han, Ki-Won · Baek, Min-Ho

Abstract

The following improvement plans are suggested in this study to facilitate implementing a pilot project for building a disaster resistant community organized by the National Emergency Management Agency in 2008, and ultimately to expand the project nation-wide. Regarding legislative aspects, legal grounds should be established such as devising a new clause in the Counter Measure for Natural Disaster for assigning a disaster resistant community or city, and devising a tentatively named “Act for Disaster Resistant Community Project” as a local governance regulation. Regarding administrative aspects, a project master plan focused on active participation of the local residents should be designed. Moreover, a certain amount of the project budget should be allotted not only to structural contents but also to non-structural contents. Regarding organizational aspects, an education program for training local disaster prevention leaders should be actively promoted and a local disaster prevention governance system should also be established among official and unofficial local organizations. Furthermore a preemptive consulting system with disaster prevention experts as well as an evaluation system to monitor the project implementation process should be introduced.

Key words : Project for Building a Disaster Resistant Community, Local Disaster Prevention, Local Community

요 지

2008년부터 소방방재청이 추진하고 있는 방재마을 만들기 시범사업을 조기에 정착하고 전국적으로 확대하기 위해서 법률적인 측면에서는 자연재해대책법에 방재도시(마을)의 지정에 관한 조항 신설과 지방자치조례로 “(가칭) 방재마을 만들기 조례”를 제정하는 등 법적기반을 마련하여야 하고, 행정계획적 측면에서는 주민주도형 방재마을 사업계획서의 수립과 더불어 사업내용이 구조적인 콘텐츠 뿐만 아니라 비구조적인 콘텐츠에도 일정규모의 사업비를 배분하여야 하며, 마지막으로 조직적 측면에서는 지역 방재리더 육성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지역사회의 공식적·비공식적 조직간에 지역방재 거버넌스 체제도 구축하여야 하며, 방재전문가에 의한 사전 컨설팅제도 및 사업추진과정에 대한 평가시스템이 도입되어야 한다.

핵심용어 : 방재마을 만들기, 지역방재력, 지역공동체

1. 서 론

매년 반복되는 자연재난을 극복하기 위하여 세계 각국은 재해에 강한 도시와 마을을 만들기 위한 다양한 재해저감시책을 199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시작하였다.

특히, 일본은 1995년 1월 고베지역에서 발생한 한신·아와지 대지진을 계기로 지역단위의 방재가 정책의 핵심으로 부각되었다.

이는 대규모 재난시 국가에 의해 제공받는 방재행정서비스가 그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다는 교훈으로부터 국가방재에서 지역자율방재로 방재정책방향이 전환되었음을 의미

한다(소방방재청 2007; 김경남 2007).

지역을 단위로 하는 방재는 기존의 방재가 재해를 유발시키는 발생요인에 중점을 두고 있는 점에 반하여 재해를 유발시키는 요인이 지역에 어떠한 영향을 주며 어떻게 이를 극복하여야 하는지에 관심을 두고 있다.

다시말해, 재해에 강한 지역을 만드는 것은 재해로 발전할 수 있는 자연현상에 대하여 재해로 발전시키는 인자를 제거하는 것으로 지역이 가지고 있는 재해에 대한 취약성을 최대한 해소하고자 하는 것이다(백민호, 2009).

현재 우리나라는 지역을 단위로 하여 재해위험지구로 지정하여 위험요소를 해소하고 있으나 이는 재해발생이력을 통하

*정회원 · 강원도 삼척시청 전략산업과(E-mail: ibada@korea.kr)

**강원대학교 삼척캠퍼스 건축학과 교수

***정회원 · 강원대학교 삼척캠퍼스 소방방재학부 교수(교신저자)

여 재해발생인자를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어 지역주민의 참여도가 극히 떨어지고 있다.

하지만 지역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그 지역의 주민들이 주체가 되어 스스로 지역에 대한 위험을 자각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통하여 스스로 재해에 강한 마을을 만들어 가는 과정이 필요하게 되었다.

그러므로 방재마을 만들기는 어떤 완성품의 기준을 충족시키는 결과물이라기보다는 하나의 안전한 마을을 만드는 과정으로서의 성격을 갖는다.

따라서, 본 연구범위는 익명성이 높고 공간적 범위가 넓은 시·군·구 단위의 “방재도시 만들기”보다 친밀감 있고 공간적 범위가 좁은 통·리(읍면동 포함) 단위의 “방재마을 만들기”로 한다.

연구방법은 방재마을 만들기에 대한 이론적 배경을 알아보고 방재마을 만들기와 관련된 제도에 대하여 법률적 측면, 행정계획적 측면, 조직적 측면에서 분석하고 국내 마을만들기 유사사례를 비교분석한 후 우리나라의 방재마을 만들기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2. 방재마을 만들기에 관한 이론적 배경

2.1 방재마을 만들기의 의의

사전적 의미로 “도시(都市)”는 일정한 지역 내에 밀집되어 있는 이질적인 사람들이 주로 비농업 경제활동에 종사하면서 공동생활을 유지하는 지역 단위를 말한다(이종수, 2009).

“마을”은 공간적, 사회적인 기능을 수용하는 동시에 인간의 조직체에서 파생되는 경제적 기능과 문화적 기능, 정치·행정적인 기능을 내포하는 공간이다. 즉 마을은 공간이라는 개념에서 이뤄지는 인간관계의 사회적인 조직체로 일상적인 환경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거주지를 비롯해서 일터와 쉼터, 자주 오가는 장소, 거리를 의미한다(정석, 1999).

광주광역시 서구 행복마을 만들기 지원조례의 경우, 마을의 개념을 생활환경을 같이 하는 공간적 개념과 환경·문화 등을 공유하는 사회적 개념을 총칭하는 의미로 사용하고 있다.

그러므로, 공간적 의미에서의 방재도시의 개념은 「시·군·구」 단위의 기초지방자치단체가 도시의 재난예방을 위하여 재난위험요소를 발굴하고 예방대책을 추진함으로써, 재난발생시 신속한 재난대응을 통하여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재난관리 환경이 제공된 지역을 의미한다.

이와 마찬가지로, 방재마을은 방재도시보다 작은 규모인 「통·리(넓은 의미로는 읍·면·동을 포함)」 단위의 행정구역으로 주로 주민주도적 마을 운영과 재난발생시 주민의 자율방재의식에 기초하여 재난상황에 대응하는 커뮤니티(Community)를 의미하며, 방재도시와 방재마을의 개념은 표 1과 같다.

2.2 방재마을 만들기 사업의 필요성

지역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그 지역의 주민들이 주체가 되어 스스로 지역에 대한 위험을 자각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으며, 이를 통하여 스스로 만들어 가는

표 1. 방재도시와 방재마을의 개념

구분	방재도시	방재마을
주체	지자체 주도(주민 포함)	주민 주도
범위	대규모 지역단위(시·군·구)	중·소규모 마을단위(읍·면·동 및 통·리)
성격	방재 예방 대책 마련 및 대응 환경 조성	방재 예방 대책 마련 및 대응 환경 조성
도시계획과의관계	도시레벨의 방재관련계획	지구레벨의 방재관련계획

과정이 필요하다.

이러한 재난환경변화에 기인한 방재마을 만들기 사업의 도입배경은 첫째, 자연재해위험지구에 대한 정비사업을 추진하는데 타 부처 유관사업과의 연계성 없이 개별적으로 추진됨으로서 재해예방효과가 저감되었다. 둘째, 수해위험교량, 급경사지 등 재해에 취약한 지방관리시설이 산재해 있으나,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재정부족으로 인하여 예방투자가 적기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셋째, 지역방재개념을 도입함으로써 주민참여유도를 통하여 지역자율 방재의식을 고취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넷째, 현행 자연재해예방사업은 자연재해의 취약요인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업을 시행하지 않고, 시설물 중심으로 단편적으로 사업을 시행하였다. 다섯째, 마을이 조성되어 있는 환경적 영향을 고려하여 취약요인이 유사·인접되어 있는 마을을 대상으로 취약요인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재해예방사업을 추진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소방방재청, 2007).

2.3 방재마을 만들기 사업의 유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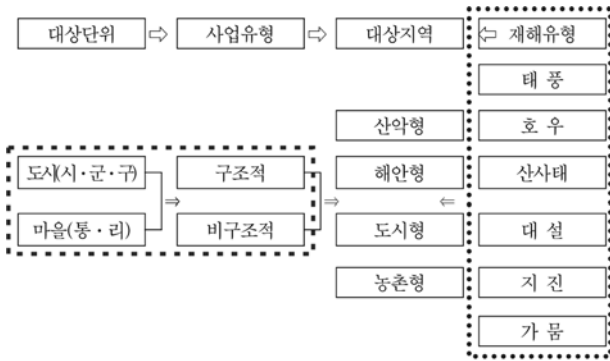
소방방재청이 주관하는 방재마을 시범사업은 지역방재 개념을 도입하여, 도시(시·군·구)와 마을(읍·면·동 및 통·리) 단위에서 지자체와 주민들이 함께 참여하는 방재마을 만들기 사업유형으로 재해예방 건강마을, 방재문화 활력마을, 방재기반 우수마을 등을 제시하고 있다.

방재마을 만들기 시범사업 대상지는 지정학적 위치에 따라 산악지형이 70% 이상은 산악형, 해안에 접하는 일반지역은 해안형, 해안에 접하지 않은 지역으로 광역시·일반시·읍의 인구밀집지역은 도시형, 해안에 접하지 않은 지역으로 도시형 이외의 지역은 농촌형, 그리고 도시·농촌·산간·해안형이 2개 이상 복합적으로 위치한 지역은 복합형으로 유형화하고 있다.

방재마을 만들기 시범사업의 유형은 그림 1과 같이 대상단위, 대상지역, 재해유형별로 구분하여 구조적 사업(하드웨어적 사업)과 비구조적 사업(소프트웨어적 사업)으로 나누어진다.

구조적 사업의 콘텐츠는 유역 방재 콘텐츠, 사방댐 구축 콘텐츠, 정보화체계 구축 콘텐츠, 통수량 억제 콘텐츠, 풍수해 예방 콘텐츠, 지진피해 경감 콘텐츠, 침수피해 예방 콘텐츠 등이, 비구조적 사업의 콘텐츠는 재해예방을 위한 주민·기업·단체 자구노력, 풍수해 예방 활동, 지진피해 경감활동, 침수피해 예방활동 등이 해당된다.

또한, 방재마을 만들기 사업을 추진단계별로 구분하여 행정기관과 주민이 담당할 역할을 나누어 보면 표 2와 같다.



자료 : 방재도시(마을) 만들기(백민호, 2009)

그림 1. 방재마을 만들기의 사업유형 분류

표 2. 사업 추진단계별 주요역할

구분	준비단계	구상단계	실천단계	평가단계
행정기관	기본계획수립, 예산확보 및 지원	세부계획 수립, 기존사업 문제점 도출	사업발주 및 시행 (구조적 사업)	평가시행, 문제점 도출 및 환류
주민	추진협의회 참여, 방재자원제공	계획수립시 참여, 주민의견제시	마을 만들기 참여 (비구조적 사업)	평가참여, 의견제시

2.4 방재마을 만들기 추진주체

방재마을 만들기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는 (가칭) 「방재마을 만들기 추진협의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방재마을 만들기 추진협의회」는 지역주민과 단체(의용소방대, 적십자사 등), 기업인(공장, 시장상인 등), 유관기관(시군구청, 학교, 군부대, 경찰, 소방 등) 및 민간전문가 등이 공동으로 참여하여야 한다.

추진협의회는 방재마을 만들기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단계별 업무분담을 통해 사업계획이 순조롭게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할 것이다.

현재 소방방재청이 추진하는 방재마을 만들기사업의 추진 주체는 표 3의 유형중 행정기관 주도형이라 하겠다.

2.5 지역방재력과 방재마을 만들기와의 관계

지역방재력에 대한 정의는 매우 다양하다. 물적 자재인 방재시설, 자재, 식료, 구급품과 이를 응용할 수 있는 전문가, 조직, 개개인의 의식, 기술, 행동력 및 체력 등을 포괄하기도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사람, 조직중심으로 한정하기도 한다.

자연재해에 대비한 지역방재력은 그 지역의 자연환경 및 문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예를 들면 강풍을 동반한 화재가 빈번한 지역에서는 마을 내 주택이 산개(散開)형으로 배치되어 화재피해에 대비하고, 어촌의 주택은 강풍에 대비하여 지붕을 그물과 돌로 고정하는 등 나름대로의 경험과 자연환경적 특성을 바탕으로 한 재난예방활동을 통하여 재난피해를 최소화하는 모습을 우리는 선조들의 방재문화생활 속에서 엿볼 수 있다(김경남 등, 2009).

지역방재력의 발휘형태는 일반적으로 재난관리과정의 예방, 대비, 대응 및 복구의 단계로 설명되며, 실제 재난현장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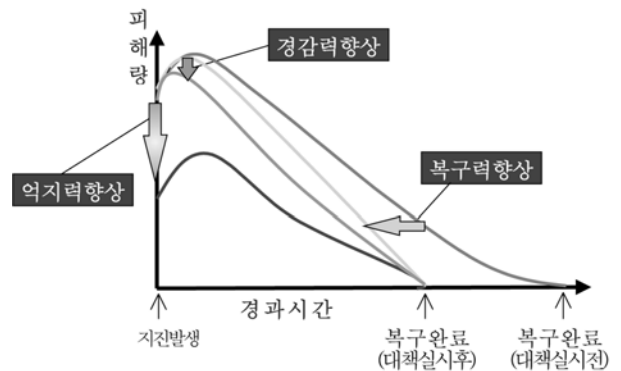
지역방재력 향상을 위한 방재마을 만들기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표 3. 마을 만들기 추진 주체에 따른 유형

유형	내용
행정기관 주도형	행정이 주도하여 주민에게 사업을 제안
시민단체 주도형	시민단체가 주도하여 주민과 함께 전개
전문가 주도형	전문가가 행정과 주민 사이에서 중간역할을 수행
주민주도형	주민들 스스로 나서거나 주민이 먼저 시작하고 행정이 지원

표 4. 지역방재력의 발휘형태

구분	내용
발생 억제	재해를 야기하는 사상, 즉 외력을 소멸시키거나 축소시키는 것
억지력 향상	재해를 야기하는 사상이 발생하였을 때 지역사회가 받는 피해를 소멸시키거나 혹은 억제
경감력 향상	지역사회가 피해를 받았을 경우 그 확대(2차피해)를 방지
복구력 향상	피해를 받은 지역사회를 신속히 복구



자료 : 地震防災における協働(山本 正典, 2004)

그림 2. 지역방재력의 구성 성분과 효과

적용되는 개념과 방식은 각 단계별로 구분할 수 있다.

山本 正典(2004)은 이에 근거하여 지역방재력을 표 4와 같이 4가지의 형태로 발휘한다고 하였다.

이중 “발생 억제”는 인적재난에 대해서는 대안이라 할 수 있지만, 지진, 태풍 등에 의한 거대 에너지를 지닌 자연재난에 대해서는 불가능하다. 즉 자연재난에 대한 대안은 “억지력 향상, 경감력 향상, 복구력 향상”의 접근방식이 필요하다.

따라서, 그림 2와 같이 지역방재력은 시간기준으로는 억지력, 경감력, 복구력의 종합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여기서, 억지력은 지역방재 기반시설 정비 등과 같이 대규모 공공투자와 이의 추진을 위한 주민합의가 필요한 경우와 개인의 주택보수·보강과 같이 개인적 경제능력에 제한을 받는 경우로 구분할 수 있다. 경감력은 발생한 피해의 확대를 방지하는 능력으로서 “구조, 구급, 소화, 피난이라는 응급대처를 어떻게 정확히 수행하는가?”라는 위기관리능력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복구력은 대체로 억지력과 경감력에 의해 지배되는 것으로 재해발생전에는 주민들의 “의지”를 중심으로

평가할 수 밖에 없다.

그러므로 지역방재력 향상을 위하여는 지방자치단체의 노력 뿐만 아니라 지역주민이 함께 참여하는 각종 방재시책의 개발이 절실하게 요구된다.

3. 방재마을 만들기와 관련된 제도

3.1 법률적 측면의 방재마을 만들기

3.1.1 방재마을 만들기 관련 법률

현재 우리나라는 방재마을 만들기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뒷받침 할 수 있는 직접적인 법적 근거는 제정되어 있지 않다.

하지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2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26조에 방재와 관련된 시범도시의 지정과 운영에 관련된 규정이 일부 포함되어 있다. 여기서의 시범도시는 도시의 경제·사회·문화적인 특성을 살려 개성있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도시를 경관·생태·정보·통신·과학·문화·관광·교육·안전·교통 및 도시정비 유형으로 나누어 시범도시를 지정하고 있다.

시범도시의 선정기준은 지역균형발전에 기여하고 주민의 호응도가 높고,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사업으로서 재원조달계획이 확실하고 실현 가능성이 높은 지역으로 하고 있다.

이외에도 표 5과 같이, 방재마을 만들기와 관련된 법률로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자연재해대책법, 지진재해대책법, 소방기본법 등이 있다.

3.1.2 방재마을만들기 관련 조례

수원시 등 일부 지방정부에서는 시민의 손상예방 활동과 안전의식 함양을 위하여 안전도시만들기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세계보건기구(WHO)가 권장하는 안전도시 요건을 갖추기 위하여 2006년부터 안전도시 만들기와 관련된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강진군 등 다른 지방정부는 주민자치기능 강화와 지역공동체 형성을 도모하고, 주민 스스로 지역을 아름답고, 쾌적한

특색있는 지역 만들기를 위하여 표 6와 같이 지역적 특색을 살린 다양한 종류의 마을 만들기 조례를 제정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 마다 다양하게 제정된 아름다운 마을 만들기 조례, 살기좋은 마을 만들기 조례, 좋은 마을 만들기 조례, 행복 마을 만들기 지원조례 등은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과 주민의 삶의 질 개선을 주목적으로 제정된 조례들이다.

그러나, 방재마을 만들기와 직접적으로 관련있는 조례는 아직까지 제정되어 있지 않지만 유사한 성격의 시책인 안전도시 만들기와 관련된 조례로 서울특별시 마포구 안전도시만들기 조례, 서울특별시 노원구 안전도시사업 추진 조례 등이 제정되어 있다.

3.2 행정계획적 측면의 방재마을 만들기

3.2.1 안전관리계획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은 국가재난관리의 장기적인 마스터플랜으로서 재난의 예방·대비·대응·복구 등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기본방향과 매년 관련부처가 추진할 안전관리계획 등을 포함하여 5년마다 수립하며, 이에 따라 집행계획과 세부집행계획을 작성하게 된다.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은 총칙과 풍수해대책, 설해대책, 가뭄재난대책, 지진재난대책, 해일대책, 항공재난대책, 철도재난대책, 도로재난대책, 해상재난대책, 방사능방재대책, 전기·유류·가스재난대책, 폭발·대형화재대책, 건축물·통신 등 시설물재난대책, 독극물·환경오염사고대책, 국가기반체계 보호대책, 산업재해대책으로 구성된다.

지방자치단체의 경우도 국가와 같이 지방자치단체별 지역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게 된다.

하지만, 안전관리계획은 개략적인 계획만 포함하고 있으며, 방재마을 만들기와 밀접하게 연계된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3.2.2 풍수해 저감종합계획

시장·군수·구청장은 풍수해의 예방 및 저감을 위하여 5

표 5. 중앙정부의 방재마을 만들기 관련 법률

법령	대상	주요내용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방화지구	○ 도시기본계획 : 방재 및 안전에 관한 부문별 내용 포함 ○ 도시관리계획 : 안전에 관한 계획 포함 ○ 지구단위계획 : 화재 위험을 예방, 풍수해, 산사태, 지반붕괴 그 밖의 재해 예방 ○ 시범도시의 지정 지원
건축법	방화지구 재해관리구역	○ 건축물에 대한 규제 ○ 건축물의 건축을 제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특정관리대상시설 지정·관리·정비	○ 안전관리계획 ○ 특정관리대상시설로부터의 재난발생 위험성을 제거하기 위한 장·단기 계획의 수립
자연재해대책법	자연재해위험지구	○ 풍수해저감종합계획 ○ 상습침수지역, 산사태위험지역 : 재해위험지구 정비계획
지진재해대책법	내진설계기준 설정	○ 기존 시설물의 내진보강기본계획 수립
소방기본법	화재경계지구	○ 도시의 건물밀집지역등 화재가 발생할 우려가 높거나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 그로 인하여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일정한 구역

자료 : 도시방재에 관한 연구: 일본의 사례를 중심으로(문채 등, 2003) 재작성.

표 6. 지방정부의 방재마을 만들기 관련 조례

조례명	제정일	목적
수원시 안전도시 조례	‘07.01.03	○ 시민의 안전증진 및 도시의 안전문화 형성에 대한 가치와 인식을 제고하여 누구나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안전도시 구현
서울특별시 강북구 안전도시만들기 조례	‘09.05.15	○ 구민의 안전증진과 안전문화형성을 이루기 위한 강북구 안전도시만들기 사업의 원활한 수행과 세계보건기구(WHO)가 권장하는 안전도시 요건을 갖추기 위한
서울특별시 마포구 안전도시만들기 조례	‘08.01.07	○ 구민의 손상예방 활동과 안전의식 함양을 위하여 추진하는 마포구 안전도시만들기 사업의 원활한 수행과 세계보건기구(WHO)가 권장하는 안전도시 요건을 갖추기 위한
원주시 안전도시 추진 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06.09.22	○ 시민의 안전의식 함양과 안전도시 추진을 위한 원주시 안전도시 추진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
서울특별시 노원구 안전도시사업추진 조례	‘09.07.30	○ 구민의 손상예방 활동과 안전의식 함양을 위하여 추진하는 노원구 안전도시만들기 사업의 원활한 수행과 세계보건기구(WHO)가 권장하는 안전도시 요건을 갖추기 위한
서울특별시 송파구 안전도시사업추진조례	‘06.11.20	○ 구민의 손상예방 활동과 안전의식 함양을 위하여 추진하는 건강하고 안전한 송파 만들기 사업의 원활한수행과세계보건기구(WHO)로부터안전도시공인을받기위하여필요한사항을규정
아산시 안전도시만들기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08. 01. 07	○ 시민의 안전의식 함양과 세계보건기구(WHO)가 공인하는 안전도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아산시 안전도시만들기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
광주광역시 북구 아름다운 마을만들기 조례	‘04.03.25	○ 주민자치 기능 강화와 지역공동체 형성을 도모하고 주민 스스로 지역을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기 위하여 아름다운 마을 만들기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
군산시 살기좋은 마을만들기 조례	‘07.10.30	○ 주민자치 기능강화와 살기좋은 마을 만들기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연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고 주민의 삶의 질 향상
안산시 좋은 마을만들기 조례	‘07.09.27	○ 주민자치기능 강화와 지역공동체 형성은 물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강진군 살기좋은 마을 만들기지원에 관한 조례	‘08.01.16	○ 자치역량 강화와 쾌적하고 활력이 넘치는 과거의 지역 공동체를 복원하고 군민 스스로가 마을을 살기좋은 곳으로 만들 수 있도록 이에 필요한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삶의 질 향상

자료 : 방재시범마을 발전전략에 관한 연구: 삼척시 정라지구를 중심으로(권건주, 2009), 재작성

년마다 시·군·구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시·도 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도지사는 시·군·구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을 기초로 시·도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을 수립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방재청장의 승인을 얻어 이를 확정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시·군·구 풍수해저감종합계획에는 유역현황, 하천현황, 기상현황, 방재시설현황 등 일반현황과 풍수해취약시설·지구현황, 풍수해 발생현황, 복구현황 등 풍수해특성 조사·분석사항 및 재해위험도 분석사항 등을 포함하여 수립하게 된다.

하지만, 안전관리계획과 마찬가지로 풍수해 저감종합계획의 경우도 방재마을 만들기와 관련된 내용이 미미하지만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지역의 재난환경적 특성에 맞는 재난에 방화활동을 하는데 매우 유용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3.3 조직적 측면의 방재마을 만들기

3.3.1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방재마을 만들기의 중심조직의 하나인 지역자율방재단 조직의 기본적 사항들은 지방자치단체별로 제정되는 조례에 명시되어 있으며, 단장을 중심으로 읍면동 대표, 단체의 대표, 방재전문가 등으로 구성되는 운영협의회를 두고 있다. 지역자율방재단의 조직은 기본적으로 일반조직(일반회원)과 전문조직(전문회원)으로 구분된다.

지역자율방재단의 운영원칙은 첫째 민간중심의 민관 파트너십에 충실한다. 둘째 일반회원은 전문성이 필요하지 않는 단순 활동을, 전문회원은 개인 또는 단체의 전문성을 고려한 활동을 부여한다. 셋째 활동은 평상시(일상적)와 재해 발생시(비일상적)로 구분하며, 평상시는 예방, 대비활동을, 재해시는 대응, 복구활동을 한다.

하지만, 지역자율방재단이 읍면동 위주로 편성됨에 따라 지역자율방재단원의 수가 통·리미울단위로 적게 편성되어 방재마을 만들기 사업을 전적으로 지역자율방재단 중심으로 운영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3.3.2 지역방재 거버넌스 구축

방재마을 만들기 운영을 위하여 가장 핵심이 되는 사항은 지역 주민자율의 방재조직의 구성이다. 이는 자율 방재조직을 통하여 지역 주민 스스로가 지역에 대한 재난위험요소 파악과 지역에 대한 애착을 가질 때만이 방재마을 만들기 사업은 성공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국외 사례를 통하여도 증명된 사실로써 관주도의 사업은 하드웨어 정비에 적합한 것으로 민간참여 및 실질적인 지역 주민의 참여를 통하여 지역방재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는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방재조직이 필수적이며, 방재마을 만들기 사업의 진행도 하향식(Top-Down) 방식이 아닌 상향식(Bottom Up) 방식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또한,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의 역할과 지역주민의 역할을

명확히 하고, 상호간의 협력을 통하여 지역방재력을 향상시켜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할 것이다.

4. 국내 마을 만들기 유사사례 분석

4.1 국토해양부의 「살고 싶은 도시만들기」

살고싶은 도시란 어울려 살기 좋은 건강한 도시, 경제적으로 활력 있고 일하기 좋은 도시, 여유롭고 창조적이며 문화적인 도시를 건설하여 경제, 환경, 사회의 모든 영역에서 지속가능한 국가발전을 선도할 수 있는 도시를 의미한다.

2007년부터 현재까지 국토해양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살고 싶은 도시만들기” 시범사업의 법적근거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27조의 규정이다.

시범사업의 목적은 우리 도시의 한계를 극복하고 도시민의 삶의 질을 한 단계 더 높일 수 있는 정책으로 이 때까지 추진한 행복도시·혁신도시·기업도시 등 물적 위주의 국토균형발전 토대위에 「삶의 질」 중심의 국토균형발전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살고 싶은 도시」의 개념은 그림 3과 같다.

2009년 살고 싶은 도시만들기 시범사업부터는 ‘시범도시사업’(시범도시)과 ‘시범마을사업’(시범단지 및 시범지구)으로 구분하여 시행하고 있다.

「시범도시」사업은 기초지자체가 그 도시의 경쟁력 우위요소를 발굴하여, 이를 토대로 특화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중앙정부가 지원하는 정책사업이고, 「시범마을」사업은 주민이동(洞)단위 이하의 생활권(커뮤니티)을 대상으로 마을을 진단하고 스스로 삶을 꾸어 나가는 시범지구(단지 포함) 규모의 마을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게 된다.

살고 싶은 시범도시의 사업주체는 기초지방자치단체장이며, 주민·전문가 등과의 거버넌스 체계구축을 통하여 사업을 추진한다.

시범마을의 사업주체는 마을대표·시민단체 등이 시범마을사업추진협의회를 구성하고, 협의회의 장이 사업시행 주체가 되며 시범사업의 응모자격은 표 7와 같다.

살고 싶은 도시만들기 시범사업중 「시범도시」의 유형은 특화발전·도시경쟁력 및 지속가능성 제고라는 시범도시의 취지를 살리고 시범도시사업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표 8과 같이 6개 유형으로 통합하여 사업을 추진하게 되며, 방재마을 만들기와 관련된 사업유형은 안전·건강도시형이 해당된다고 하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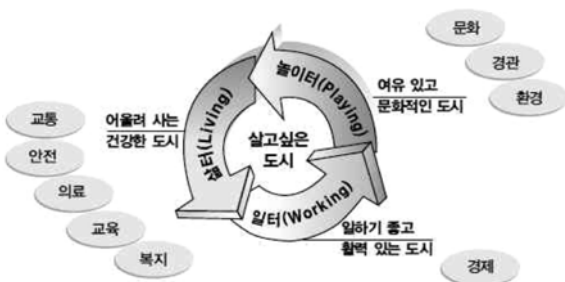


그림 3. 살고 싶은 도시만들기의 개념도

2007년과 2008년도에 시범도시로 지정된 기초지자체 현황을 살펴보면 표 9과 같고, 정부가 지원하는 예산은 시범도시는 15~20억원, 시범마을은 2~3억원 범위내에서 차등하여 지원하게 된다.

4.2 행정안전부의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

행정안전부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 제18조의 3에 근거하여 2007년부터 도시와 농산어촌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질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사회, 문화, 환경을 포함한 종합적 관점에서 지역주민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살기 좋은 지역만들기”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2009년 5월 29일 근거조항인 시행령을 폐지하였다.

살기 좋은 지역만들기 사업의 목적은 급속한 산업화로 인한 과잉도시화, 열악한 삶의 질, 농산어촌의 인구급감, 고령화 문제, 그리고 중앙주도의 획일적 지역개발로 개성과 특색 없는 지역 양산 등 우리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현실의 생활문제를 구조적으로 개선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다.

살기 좋은 마을의 구성요소는 표 10과 같이 편리성과 접근가능성(Good Convenience and Accessibility), 자연과 가까운 삶(Oasis in Green Life), 따뜻한 이웃 공동체(Open Hands for Neighbors), 경제적 성장성(Drive to Wealth) 등 4가지 요소로 구성되어 있다.

표 7. 살고 싶은 시범도시(마을) 응모자격

구분	응모단위	응모자
시범도시	기초지자체(시·군·구)	기초지자체장
시범마을	기초지자체(시·군·구) (시·구 읍의 동(洞) 규모의 마을·단지·지구 및 기타 커뮤니티 단위)	기초지자체장 (시범마을사업추진협의회 : 응모 계획 수립 및 사업 진행)

표 8. 살고 싶은 시범도시 만들기의 유형

시범도시 유형	국토계획법 제127조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126조
특화발전도시 유형		
활력도시형	-	도시정비
문화도시형	경관·문화·관광	-
환경도시형	생태	교통
안전·건강도시형	-	안전
교육·과학도시형	정보통신·과학	교육
자유창의형	상기의 유형을 융복합화한 유형	

표 9. 살고 싶은 시범도시 지정 현황

구분	2007년 시범도시	2008년 시범도시	계(개)
시(市)	경기 안산시 강원 속초시	전남 여수시 경기 과천시 제주 제주시	5
군(郡)	충남 서천군	충남 금산군 전북 무주군	3
구(區)	인천 남구 광주 광산구	광주 북구	3
계(개)	5	6	11

표 10. 살기 좋은 마을의 구성요소

구성요소	주요내용
편리한 시설과 접근성	○ 편리한 시설 및 안전성 ○ 교육, 의료, 복지, 문화적 인프라가 중요 ○ 각 지역에 모든 시설을 일률적으로 확보해 주는 것이 아니라, 일정 규모 이상의 지역에서는 시설을 구비하고, 작은 마을은 이러한 시설로의 접근성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
깨끗한 자연 속의 삶	○ 자연을 존중하는 삶과 순환체계 ○ 마을 내에 생태적 오아시스로서 숨 쉴 수 있는 공간 보유 ○ 심미적 아름다움
따뜻한 이웃 공동체	○ 이웃과의 관계공동체 ○ 공공성과 및 공적 영역 확대 ○ 이것의 규모가 발전하면 공동체, 네트워크가 이루어짐
성장성 있는 경제	○ 경제적 성장성 확보가 살기좋은 마을의 지속가능성 결정 ○ 개인적 풍요와 지역적 활력이 긴요함 ○ 모든 형태의 마을만들기에 필요 조건이나, 충분조건은 아님

자료 : 살기좋은 지역 및 살기좋은 지역 만들기 개념정립 연구용역 보고서(균형발전지원본부, 200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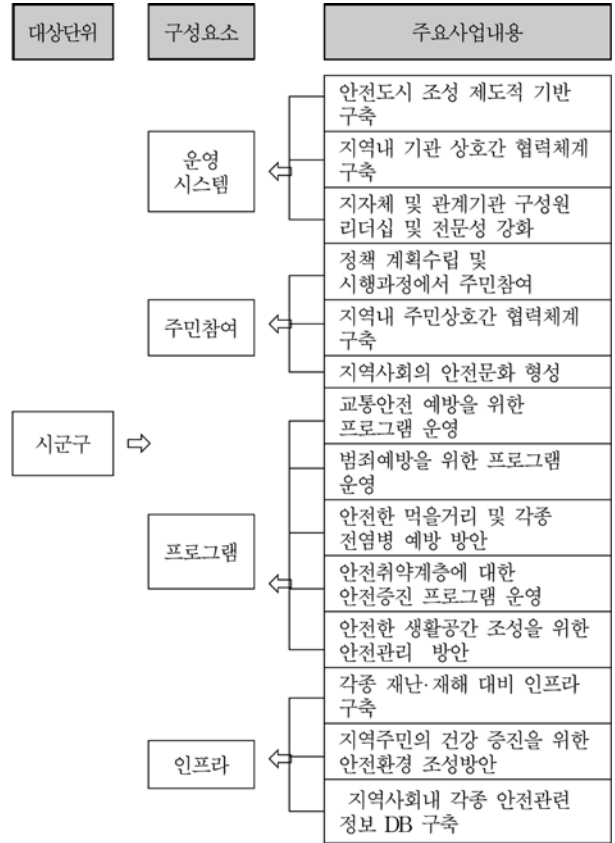
표 11. 살기 좋은 지역만들기 지정현황(2007-2009)

구분	부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남	전북	경북	경남	제주	계	
5만 이하군	국가		화천 영월 철원	단양 보은		곡성 함평 장흥 강진 진도	군위 영덕 고령	함양			14	
	시도		형성 양양			임실 진안 장수	구례 장성					
5만 초과군	국가	기장			금산	원주 무안	완도	의성	남해		8	
	시도				서천 예산	고창	해남 보성 담양					
도농 복합시	국가		양주 안성		논산	남원		포항 안동	밀양	제주	8	
	시도			강릉			광양	구미 경주				
계	국가	1	2	3	2	2	3	7	6	3	1	30
	시도			3		2	4	6	2			17
	총계	1	2	6	2	4	7	13	8	3	1	47

정부가 지원하는 예산을 살펴보면, 살기 좋은 지역만들기 사업중 국가지정 시범지역으로 선정된 30개 지역에 대하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요청한 중앙정부 정책을 묶어서 패키지로 지원하고, 3년간 평균 20억원의 인센티브 사업비를 지급하게 된다.

도지정 시범지역으로 지정된 17개 지역은 3년간 시·도가 6억원 내외의 사업비를 지원하게 되며 살기 좋은 지역만들기 지정현황은 표 11과 같다.

지역방재력 향상을 위한 방재마을 만들기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자료 : 안전한 나라만들기 안전도시(SAFE CITY)사업 추진 계획(안) (강원도 재난방재과, 2009)

그림 4. 안전도시 구성요소 및 주요사업내용

4.3 행정안전부의 「안전도시 시범사업」

행정안전부는 2009년에 들어서 안전도시 시범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전국 공모사업의 형태로 “안전도시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안전도시 시범사업의 도입배경은 유럽 등 선진국은 이미 전통적 재난관리 이외에 사고 및 손상(injury)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국가적으로 지원하고 있고 세계보건기구(WHO)에서도 지역 공동체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강조하는 “안전증진(Community Safety Promotion)” 활동을 하는 등 안전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도입하게 되었으며 시범도시로 선정된 지역에는 5~10억원의 사업비를 지원하게 된다.

여기서 안전도시는 안전·안심·안정된 지역을 만들기 위해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합심·노력하는 안전공동체(safe community)를 형성하여 각종 안전사고와 재난예방을 위한 환경을 개선해 가는 지역(도시)을 의미한다.

안전도시의 구성요소와 주요사업내용을 살펴보면 그림 4와 같다.

4.4 기존 시범도시(마을) 만들기 사업과의 비교

시범도시(마을) 만들기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은 참여정부 시절인 2007년부터이다.

우선 건설교통부(현재 국토해양부)가 주관하고 있는 살고 싶은 도시(마을) 만들기 사업은 1년단위 단기사업으로서 지원

표 12. 타 시범도시(마을) 만들기와 방재시범 마을만들기기간 비교

사업명	추진부처	사업목적	법적근거	추진주체 유형	추진년도	사업기간	지원규모 (억원)
살고싶은 마을만들기	국토해양부	○ 도시의 한계를 극복하고 도시민의 삶의 질을 한 단계 더 높일 수 있는 정책으로 이제까지 추진한 행복도시·혁신도시·기업도시 등 물적 위주의 국토균형발전 토대위에 삶의 질 중심의 국토균형발전의 일환으로 추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관(주도) + 민(참여) 복합형	2007	1년	도시:15-20억원 마을:2-3억원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행정안전부	○ 급속한 산업화로 인한 과잉도시화와 열악한 삶의 질, 농산어촌의 인구급감과 고령화 문제, 그리고 중앙주도의 획일적 지역개발로 개성과 특색없는 지역 양산 등 우리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현실의 생활문제를 구조적으로 개선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관(주도) + 민(참여) 복합형	2007	3년	20억원
안전도시 시범사업	행정안전부	○ 전통적 재난관리 이외에 사고 및 손상(injury)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지역공동체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한 안전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함	-	관(주도) + 민(참여) 복합형	2009	1년	5-10억원
방재시범 마을만들기	소방방재청	○ 개별적 산발적으로 추진하는 유관사업을 패키지화하여 지역방재개념을 도입한 종합적인 재해예방사업 추진	-	관(주도) + 민(참여) 복합형	2008	3년	60-90억원

규모는 도시의 경우 15~20억원, 마을의 경우 2~3억원이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27조의 규정에 의거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같은해 행정자치부(현재 행정안전부)도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 제18조의 3에 근거하여 살기 좋은 지역만들기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건설교통부의 살고 싶은 마을만들기 시범사업과 다른 점은 사업기간이 3년으로 보다 장기적이라는 점이다.

또한, 2009년 행정안전부는 신규사업으로 안전도시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안전도시 시범사업의 경우, 건설교통부의 살고 싶은 마을 만들기와 같이 사업기간이 1년 단위의 단기사업 위주로 추진된다는 공통점이 있다.

중앙정부가 추진하는 시범사업의 공통점은 기초지방자치단체간의 경쟁을 유발하도록 사업방식을 공모형태를 취하고 있다는 점이며, 지방자치단체의 자발적인 참여와 지역 민관협의체에 의해 사업을 추진하도록 한다는 점이다.

타 시범도시(마을) 만들기 사업과 방재시범 마을만들기 사업을 비교하면 표 12와 같다.

5. 방재마을 만들기 활성화 방안

소방방재청이 추진하고 있는 방재마을 시범사업은 민·관 파트너십에 의한 「방재마을 만들기 추진협의회」에 의하여 지역특성에 따른 재해요인을 분석함으로써, 유형에 따른 특화된 사업을 추진하여 사전에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이다.

사업추진방식의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방재마을의 구조적 사업에 대한 예산조치 및 사업, 민간단체와 주민은 비구조적 재해예방분야에 공동으로 참여하게 되며, 향후 현재 추진하고 있는 방재마을 시범사업을 성공적으로 완료하고 전국적으로 확대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활성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5.1 법률적 측면의 활성화 방안

5.1.1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

방재마을 만들기 사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활성화를 위하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2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26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살고 싶은 도시(마을) 만들기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것과 같이 사업의 지속성과 효율성을 위해서는 법률적인 기반이 필요하므로 자연재해대책법에 방재 시범도시(마을)의 지정, 방재 시범도시(마을)의 공모, 방재 시범도시(마을) 사업계획의 수립·시행, 방재 시범도시(마을)의 지원기준, 방재 시범도시(마을) 사업의 평가·조정 등의 내용을 포함하는 법률의 일부개정이 있어야 할 것이다.

5.1.2 (가칭)방재마을 만들기 조례제정

주민참여사업의 지속성을 유지하고 주민의 방재의식을 고취하기 위하여 “(가칭) 방재마을 만들기 조례”를 제정하여 주민들의 자발적인 재난관리활동을 할 수 있는 행정적 지원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이는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주민자치기능 강화와 지역공동체 형성을 도모하고, 주민 스스로 지역을 쾌적하고, 특색 있는 지역으로 만들기 위하여 제정한 “살기좋은 마을만들기 지원조례”등의 예와 같이 주민이 자발적이고 자주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사업추진의 법적기반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5.2 행정계획적 측면의 활성화 방안

5.2.1 사업계획 수립시 주민참여 확대

방재마을 만들기 사업의 핵심은 지역방재력 향상에 있으며 이를 위하여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방재역량을 강화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하므로 주민주도형 사업계획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다양한 정책적 지원이 강구되어야 한다.

또한, 행정기관 위주보다는 지역주민위주로 사업을 발굴하

여 추진하고 행정은 주민들의 방재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보조·지원하는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5.2.2 비구조적 재해예방계획 확대

대부분 방재마을 시범사업의 경우 구조적 재해예방활동에 투입되는 사업비가 비구조적 재해예방활동에 투입되는 사업비에 비하여 절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방재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구조적인 대책도 중요하지만 지역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각종 방재교육훈련, 방재지도 만들기, 재해발생요소 제거사업 등 소프트웨어적 사업비의 비율을 최소 20~30% 정도로 하여 사업계획서를 작성하도록 기준을 제정하여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구조적인 대책은 행정기관 주도로 충분히 실현할 수 있으나 비구조적 대책은 지역주민·사회단체 등의 적극적인 참여가 없이는 사업을 추진할 수 없기 때문이다.

5.3 조직적 측면의 활성화 방안

5.3.1 지역방재 리더선발 적극 육성

방재마을 만들기의 성패는 지역방재 취약성을 잘 알고 있는 지역주민의 자발적 참여가 관건이라고 할 수 있다. 아무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을 해준다고 해서 모든 방재관련 시범사업이 성공하는 것은 아니다.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지역주민들이 지역방재역량을 갖추도록 시민 방재아카데미를 개설하고 지속적으로 운영하여야 한다.

또한, 지역자율방재단, 의용소방대, 적십자사 등 지역재난관련 기관·단체 등을 대상으로 지역방재 리더육성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이들을 방재마을 만들기 사업의 선도그룹으로 육성하여 사업추진의 핵심인재로 적극 활용하여야 할 것이다.

5.3.2 지역방재 거버넌스체계 활성화

지방정부, 지역주민, 유관기관·단체(학교, 기업체, 소방, 경찰, 군부대, 지역자율방재단) 등이 참여하는 지역방재 거버넌스 체계인 「방재마을 만들기 추진협의회」를 그림 5와 같이 구축하고, 방재전문가의 적절한 활용을 통하여 지역사회에서 지역방재력 향상을 위하여 추진할 수 있는 재해예방활동에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도록 재해예방프로그램을 개발하거나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도록 동기부여를 하여야 한다.

또한, 방재마을 만들기 추진협의회 구성시 지역주민의 참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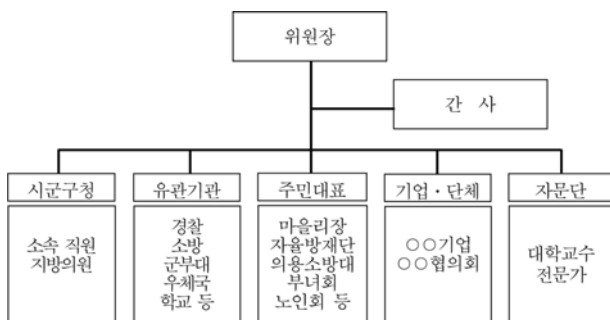


그림 5. 방재마을 만들기 추진협의회 구성안.

비율을 높이고, 관주도의 협의회 운영보다는 지역주민·시민단체 주도로 방재마을 만들기 추진협회를 운영하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5.3.3 사전 컨설팅 및 운영단계별 평가시스템 운영

방재마을 만들기 사업을 전국 지방자치단체로 확대하기 위해서는 방재마을 만들기 사업의 신청부터 사업완료까지 단계별 사업계획에 대한 방재전문가의 컨설팅과 사업진행에 대한 평가지침을 마련하여 각 단계별 성과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평가시 평가기준에 미달하는 기초자치단체는 차기사업에 불이익을 주는 등 부정적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사업목표를 초과달성한 기초자치단체는 긍정적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차별적인 지원방안을 모색하여야 할 것이다.

6. 결 론

2008년 8월 정부는 재해위험지구가 있는 253개 지방자치단체의 사업계획중 주민 스스로가 자연재해를 극복하고자 하는 의지가 강한 16개 후보지구를 선정해 민간전문가와 합동으로 평가하여 강원도 삼척시 정라지구, 전라남도 장흥군 원등지구, 충청남도 금산군 후곶지구 3곳을 “2009년도 방재시범마을 조성사업” 대상지로 선정하였다.

그러나,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지역방재력 향상을 위한 방재마을 만들기 사업의 초기단계이고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지원책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이에 방재마을 시범사업을 조기에 성공적으로 정착시키고 전국적으로 확대하기 위한 활성화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자 한다.

우선 법률적 측면에서 중앙정부는 방재 시범도시(마을)의 지정에 관한 규정이 포함되도록 자연재해대책법을 일부개정하여야 하고, 지방정부는 “(가칭) 방재마을만들기 조례”를 제정하여 안전하고 재해에 강한 마을만들기 사업의 법적근거를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행정계획적 측면에서는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이 중심이 된 주민주도형 사업계획을 적극 발굴하여야 하고, 재해예방을 위하여 구조적인 측면의 각종 시설물 설치 뿐만 아니라 주민들의 방재의식 고취 등 비구조적인 재난관리활동에도 일정비율의 사업비를 배분하여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조직적 측면에서는 지역 방재리더 육성사업을 전개하여 방재마을 만들기 사업을 주도적으로 추진할 마을의 선도그룹을 양성하고, 지역사회를 움직이는 각종 공식적·비공식적 조직간의 지역방재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방재마을 만들기의 사업평가를 위하여 방재전문가에 의한 사전 컨설팅제도와 사업추진과정 및 사후평가를 위한 평가시스템을 도입하여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강원도 재난방재과 (2009) 안전한 나라만들기 안전도시(SAFE

CITY)사업 추진계획(안).

권건주 (2009) 방재시범마을 발전전략에 관한 연구: 삼척시 정라 지구를 중심으로. **한국행정과 정책연구**, 제7권, 제1호, pp. 35-64.

균형발전지원본부 (2007) **살기좋은 지역 및 살기좋은 지역 만들기 개념정립 연구용역 보고서**.

김경남 (2007) **지역재난관리의 주민조직 활성화 방안**. 강원발전연구원.

김경남, 권건주, 백민호 (2009) 지역방재력 평가에 관한 연구(2): 강원도를 중심으로. **한국방재학회논문집**, 제9권, 제1호, pp. 81-89.

문채, 윤혜철, 조판기 (2003) **도시방재에 관한 연구: 일본의 사례를 중심으로**. 국토연구원.

백민호 (2009) 방재도시(마을) 만들기. **방재저널**, 제11권, 제1호, pp. 54-68.

이종수 (2009) **행정학 사전**, p. 175.

소방방재청 (2007) **방재시범마을 조성을 위한 연구**.

정석 (1999) **마을단위 도시계획 실현 기본방향**. 서울시정개발연구원, pp. 4-5.

정승현 (2008) **살고싶은 도시만들기의 성과와 과제**. 국토, 2008년 7월, pp. 6-11.

山本 正典 (2004) **地震防災における協働**(<http://www.i.hosei.ac.jp/~muto/Dialogue/D203yama-moto.pdf#search='地震防災における協働'>)

<http://www.elis.go.kr/>

<http://www.kwnews.co.kr>(검색어: 방재시범마을)

◎ 논문접수일 : 09년 08월 27일
 ◎ 심사의뢰일 : 09년 09월 01일
 ◎ 심사완료일 : 09년 09월 21일